

서 울 특 별 시

서도건181-1104

67.5.12

수신 기획관리관
법무부
제목 무허가 건물 양성화 추진 위원회 설치

1. 무허가 건물에 대한 근본적인 시책으로 별첨 계획서와 같이 양성화
방침이 확정 되었음.

2. 본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안과 같이 추진 위원회를
설치 코자하오니 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위원회에게 부여할 임무

자문(검의)기관으로서,

4. 양성화 사업에 관한 종합연구내지 시책결정,

5. 건물기량사업의 지도 및 촉진방안심의,

6. 국유지, 사유지 또는 개인소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분양(임대, 불하
또는 매매등)하기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입.

7. 특히 건물개량사업으로서 집단적으로 개량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관계집무자(과장급)로 구성된 집행반을 편성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음.

첨부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 양성화 추진 위원회규정(안) 끝.

도 시 계획국 장

건축기획 허执령

0018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 양성화추진위원회규정(안)

제1조(목적)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추진에 관한 효과적인 방안을 시장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 양성화 주친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2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찰한다.

1. 양성화조치에 관한 조사, 연구및대책수립.
2. 불량건물 개량에 관한 조사, 연구및대책수립
3. 대지분양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및대책수립.
4. 기타 양성화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1)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도시계획국장이 된다.
(2)위원은 기획관, 법무관, 예산과장, 관제과장·건축과장, 계획과장
주택과장, 사회과장, 녹지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급수과장.
청소제2과장이 된다.

제4조(분과위원회)

- (1)위원회의 목적을 효과적이며, 전문적으로 분장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건물개량분과 위원회
 2. 대지분양대책분과 위원회
- (2) 건물개량분과 위원회는 건축과장, 예산과장, 계획과장, 녹지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및 급수과장이 되고, 건물개량지도 및 개량사업
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분장한다.

15

0019

(3) 대지분양대책 분과위원회는 관제과장, 건축과장, 계획과장, 및
녹지과장이 되고, 대지분양대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분장한다.

(4) 건물개량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건축과장, 대지분양대책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관제과장이 된다.

제5조(집행반설치)

(1) 건물개량지도와 개량사업에 관한 실무적인 조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물개량집행반을 둔다.

(2) 건물개량집행반은 건축행정계장, 건축제1계장, 예산과제2계장,
토목고도토계장, 차수고차수시설계장이 되고, 반장은 건축행정
계장이 된다.

제6조 (소집과 심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 집행반
회의는 반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위원(반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진위및보고)

(1)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2) 분과위원회 및 집행부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6

제8조(간사와서기)

0020

(1)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집행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건축과 행정계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과 직원중에서
시장이명한다.

제 9 조(시행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록

이 규정은 196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1

0021